



: 2017-11-13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2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1. [REDACTED] 군수
2. [REDACTED] 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7. 1. 20.

주 문

1. 별지1 취득세 등 부과내역 목록(가산세 포함)의 피고들이 해당 처분일자¹⁾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2016. 11. 25.자 변론조서에는 정선군수의 처분일이 2015. 9. 1. 삼척시장의 처분일이 2015. 8. 17.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일자는 정선군수의 경우 2016. 10. 4., 삼척시장의 경우 2016. 9. 21.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 기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계약담당관 [] 관리소장)으로부터, 2014. 11. 29. [] 군 B 지상의 수목 3,767.19m³를 135,300,000원, 2014. 11. 27. [] 군 C 지상의 수목 5,678.30m³를 337,000,000원에 각 매수한 후 2014. 12. 26. 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 (계약담당관 [] 관리소장)으로부터, 2013. 7. 1. [] 시 D 지상의 수목 2,218.94m³를 103,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3. 7. 16.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14. 7. 31. [] 시 E 2,352.19m³를 100,600,000원에 매수 후 2014. 8. 18.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 (계약담당관 [] 소장)으로부터 2014.경 [] 시 F 외 1필지 지상의 수목 985.63m²)를 71,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4. 5. 21. 대금을 완납하였고, 2014. 5. 7. [] 시 G 지상의 수목 583.93m³를 32,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4. 7. 15.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14. 12. 15. 삼척시 H 지상의 수목 2,114.58m³를 241,000,000원에 매수 후 2015. 2. 13. 대금을 완납하였다(위 가. 나. 다.항 기재 각 매매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별지2 직권취소된 취득세 등 부과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별지1 취득

2) 과세관청 자료에는 1,399.83m²로 되어 있으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는 985.63m²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



세등 부과내역 목록(가산세 포함)의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고,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및 목적,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은 입목이 아닌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설령, 원고가 입목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① 지방세법이 입목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이래 계속하여 별채를 전제로 입목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고, ② 농어업 및 축산업 등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1차 산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3) 원고가 입목을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983. 10. 11. 선고82누5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시행중이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입목을 벌채하여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으로, 그 반출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주는 그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벌채의 방법으로 반출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입목이 아닌 벌채된 목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은 주산물의 근주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에 주산물의 근주에 대한 특약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원고는 해당 수목 전체가 아닌 근주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권리만을 취득한 것이 되는 바, 근주를 제외한 수목의 일부분만을 취득한 것을 곧바로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입목 자체를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위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는 양식상 원목과 입목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원고가 취득할 원목의 수량이다.

(4) 위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는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 입목 자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반출기간 내에 생장기간이 있다는 사유로 '생장량 대금'이 위와 같이 별도로 책정되도록 규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는 벌채를 통하여 원고가 취득할 원목



을 실질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5) 현행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7호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별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은 토지 위에 식재된 상태의 수목 집단인 입목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 평가되는 경우라도, 별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목을 취득한 경우 이를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소결

따라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2017-11-13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 윤아영

판사 정우용



: 2017-11-13

(별지1)

취득세 등 부과내역 목록(가산세 포함)

(단위 : 원)

순번	처분장	처분일	수목 위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1	정선군수	2016. 10. 4.	B	3,400,630	285,940
2	정선군수	2016. 10. 4.	C	8,470,150	712,210
3	삼척시장	2016. 9. 21.	D	2,904,600	249,260
4	삼척시장	2016. 9. 21.	H	5,964,750	500,070
5	삼척시장	2016. 9. 21.	E	2,597,890	219,540
6	삼척시장	2016. 9. 21.	G	832,510	70,450
7	삼척시장	2016. 9. 21.	F 외 1필지	1,847,130	156,310



: 2017-11-13

(별지2)

직권 취소 된 취득세등 부과내역목록

(단위 : 원)

순번	처분청	처분일	원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1	정선군수	2015. 9. 1.	A	3,502,640	294,510
2	정선군수	2015. 9. 1.	A	8,724,250	733,570
3	삼척시장	2015. 8. 17.	A	2,991,730	256,730
4	삼척시장	2015. 8. 17.	A	6,143,690	515,070
5	삼척시장	2015. 8. 17.	A	2,675,820	226,120
6	삼척시장	2015. 8. 17.	A	857,480	72,560
7	삼척시장	2015. 8. 17.	A	1,902,540	160,990
소계				26,798,150	2,259,550
총합계				29,057,770	



(별지3)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숙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1. 정의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매각예정가격의 사정 등

매각예정가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따라 사정한다.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가.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 2017-11-13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나. 임목 외의 국유임산물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제한 없음

다. 국유임산물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산림청장이 정하는 참가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임산물의 인도

가.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의 교부로써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국유임산물의 인도증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임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산물 운반로 설계도서 1부

(2014. 12.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운재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운재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1)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다) 1부



: 2017-11-1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1.29>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소반
임산물 소재지					
반출(벌채)기간	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벌채)면적	m ²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본)	입목재적(m ³)	조재(제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m ³ , 톤(t)]	
매각대금	원				
계약보증금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갑)

인

매수인(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 입목·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을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면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면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을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미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을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성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슬밀목·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성장량 대금 = 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성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면체금을 지정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을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을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갑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속마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그 검사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을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갈음한다.



: 2017-11-13

(제3쪽)

임지 소재지	지번 (임반·소반)	공부면적 (㎡)	대부·사용허 가 면적(㎡)	산지전용면적 (㎡)	기간	비고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국유림으로서 최초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국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을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갑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